■ 법인세법 시행규칙 [별지 제59호서식 부표 2] (2022.03.18. 개정)

(앞쪽)

사 업 연 도	. . . ~ . . .	가 산 세 액 계 산 서 (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용)	법 인 명	
			사업자등록번호	

1. 가산세액의 계산

① 구 분		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분					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				
		②계산기준	③기준금액	④가산세율	⑤코드	⑥가산세액	②계산기준	③기준금액	④가산세율	⑤코드	⑥가산세액
무신고	일반	무신고납부세액		20(10)/100	29		무신고납부세액		20(10)/100	42	
	부정	무신고납부세액		40(20)/100	31		무신고납부세액		40(20)/100	44	
		무신고납부세액		60(30)/100	80	15.1.1.개시					
과소신고	일반	과소신고납부세액		10/100	3		과소신고납부세액		10/100	46	
	부정	과소신고납부세액		40/100	22		과소신고납부세액		40/100	47	
		과소신고납부세액		60(30)/100	81	15.1.1.개시					
납부지연		(일수) 미납세액	( )	2.2/10,000	4		(일수) 미납세액	( )	2.2/10,000	51	
기타							합 계			53	
합 계					21						

법정납부기한
(. .)

납부일
(. .)

2. 과소신고 납부세액 계산

⑦ 구분	과소신고 과세표준				⑫ 과소신고 납부세액	⑬ 과세표준 금 액	과소신고납부세액			
	⑧ 계	⑨ 일반	⑩ 부정	⑪ 부정 (국제거래)			⑭ 계	⑮ 일반 [⑫×(⑨/⑬)]	⑯ 부정 [⑫×(⑩/⑬)]	⑰ 부정 (국제거래) [⑫×(⑪/⑬)]
청산소득										
토지 등 양도소득										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]

작 성 방 법

1. 무신고가산세

일반무신고와 부정무신고를 구분하여 무신고납부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적습니다.

다만,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「국세기본법」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·납부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%, 1개월 초과하고 3개월 이내는 30%,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20%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.

2. 과소신고가산세

⑧란의 과소신고 과세표준 계를 일반과소(⑨)와 부정과소(⑩), 부정과소(국제거래)(⑪)로 구분하여 ⑬란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⑫란의 과소신고납부세액가산세에 곱하여 ⑭란의 과소신고납부세액을 일반과소(⑮), 부정과소(⑯), 부정과소(국제거래)(⑰)로 구분하여 적은 후,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⑥ 가산세액의 과소신고란에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

다만,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의 90%(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%,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%, 6개월 초과 1년이내 30%,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%,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%)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.

3. 납부지연가산세

미납세액에 가산세율(2.2/10,000를 적용하되, 2019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3/10,000을, 2019년 2월 12일부터 2022년 2월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2.5/10,000를 적용한다)과 미납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.

4. ① 구분란의 기타란

「법인세법」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에 따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.

5. ■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.